

의안번호	2203978
의 퇴 인	김태선의원
회 답 일	2024. 10. 16.
추 계 번호	24B38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6조(자연환경의 연구·기술개발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자연환경을 조사</u>하고,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 기후변화 등에 의한 <u>생태계 변화와 적응</u> 등에 관하여 <u>연구 및 기술개발</u>을 하여야 함(제1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u>하여야 함(제2항) ※ 지방자치단체도 연구기술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사 실시 의무 등을 부여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6조(자연환경의 연구·기술개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자연환경의 연구·기술개발 등(안 제36조)

□ 현행법 제36조¹⁾에 따라 환경부는 생태계 연구·기술개발 사업 실시중

-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R&D)
-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R&D)

1) 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 생태계 연구·기술개발사업 현황

사업명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R&D)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R&D)
사업목적	습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탄소 중립 이행지원	토지이용 생태계별 탄소흡수원 모니터링, 측정, 평가, 검증, 관리 표준기술 개발
연구 및 기술 내용	습지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정량화 기술 및 탄소흡수를 고려한 가치증진 기술 개발	생태계 유형별(산림, 농경지, 초지, 정주지, 기타 토지) 탄소흡수·관리 모니터링 효율화 기술, 탄소흡수량 인벤토리 구축 기술,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술
수행주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개발된 연구·기술의 용도 및 보급현황	• 습지생태계의 가치와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습지 관리,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탄소흡수능 증진을 위한 습지 복원 • 연구·개발 진행중(~'26)	• IPCC 가이드의 산림지, 농경지, 초지, 정주지 기타 등 토지이용 생태계별 탄소흡수원 모니터링, 측정, 평가, 검증, 관리 표준기술 개발을 통해 생태계의 정량화된 탄소수지 평가 • 연구·개발 진행중(~'26)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표 2] 생태계 연구·기술개발사업 예결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 개발사업(R&D) (6431-778)	3,700	3,700	4,070	4,070	4,080	4,080	10,691
－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기술개발	2,000	2,000	2,600	2,600	1,248	1,248	3,497
－ 습지생태계 가치증진 기술개발	1,700	1,700	1,470	1,470	2,832	2,832	7,194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R&D)(1832-312)	—	—	2,055	2,000	1,350	1,350	2,365
－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기술	—	—	2,055	2,000	1,350	1,350	2,365
합계	3,700	3,700	6,125	6,070	5,430	5,430	13,056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연환경 조사, 생태계 연구·기술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그러나 자연환경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지형적·생태적 특성이 있고,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사 및 연구개발의 범위와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